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,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- □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, 전년대비 지하철(8.93%), 시내버스(4.68%)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.12% 늘었지만, 마을버스만 2.39% 줄어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.
- □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,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- □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 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처우 개선비 지원, 마을버스 운수 종자사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,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마을버스의 운영난과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,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